

1. 개정 이유

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용, 산악용,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/무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에 나목9)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분류			모델 구분
나.생활	9) 이륜 자전거	가)제1부 일반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
		나)제2부 산악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
		다)제3부 전기 자전거	○ 구동방식 ○ 전지종류 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이라도 별표 2 제2호에 나목9)의 모델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(별표2)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		(별표2)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	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	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
분류		모델 구분		분류		모델 구분	
나.생활 자전거	9) 이론 자전거	가)제1부 일반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〈신 설〉	나.생활 자전거	9) 이론 자전거	가)제1부 일반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
		나)제2부 산악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〈신 설〉			나)제2부 산악용 자전거	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
		다)제3부 전기 자전거	○ 구동방식 ○ 전지종류 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〈신 설〉			다)제3부 전기 자전거	○ 구동방식 ○ 전지종류 ○ 프레임 재질 ○ 프레임 형태 ○ 차체 서스펜션 ○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